

## 국제통상과 경쟁법

-역외적용 및 경쟁법의 수렴-



김 두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은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방안이지만 이 경우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이 유발될 수 있고, 관련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우수한 규범형성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과 개별 법영역이 공통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연성수렴, 경성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 I. 국제통상과 소비자후생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David Ricardo는 노동가치설을 전제하여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국제적 분업을 통하여 항상 교역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자유무역이론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입각한 교역에서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이론으로서 현실적으로 생산요소가 노동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토

지, 자본도 존재하는 점에서, 제한적인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20세기초 스웨덴의 경제학자 Eli Heckscher와 Bertli Ohlin은 비교우위의 결정이 국가별 기술격차와 노동생산성만이 아니라 노동, 자본 등의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있다는 이론을 주창하였으며 오늘날 지배적인 무역이론으로 되어 있다.<sup>1)</sup> 이 글에서 국제무역의 장점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할 능력도 여유도 없으나 오늘날 국제무역은 교역국가들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데에 이설을 제기할 이는 많지 아니하

1) 강인수 외 2인 공저, 「국제경제학원론」(박영사, 2002), 24~85면.

다고 본다. 저가의 수입상품의 공급이 없다면 국내시장의 소비자물가는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국내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무역이 개별 사업자의 상품의 평균생산비를 낮추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규모의 수요시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동서냉전의 종식과 소비에트연방의 와해로 인한 동구의 자유화·개방화로 촉발된 세계화(globalization)로 글로벌 경제시대가 개막된 후에 이러한 점은 더욱 강조되어 마땅하다.

글로벌화의 사상적 기반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그 비판적 담론은 i) 국가적·지역적·국제적인 차원의 집중화된 거대권력에 대한 비판과 분권화의 요구, ii) 지역적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성의 강요나 폐쇄적 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 iii)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파괴나 유한한 자원의 과소비에 대한 경고와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의 모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안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론은 우리가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그 합리적 수정을 통하여 가능한 한 수용하면 될 것이고,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우리가 국내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의 증대노력과 국제적으로 무역을 통한 부의 생산과 확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포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II 국제경쟁사건에서 법의 저촉문제

“국제경쟁사건”의 정의를 내린다면,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새로이 도입된 독점규제법 제2조의2를 원용한다면, 국제경쟁사건이라 함은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행위의 효과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독점규제법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사건은 2001년의 General Electric과 Honeywell 간의 기업결합의 예와 같이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외국의 거대기업간 기업결합이나 외국사업자간의 수출카르텔 결성의 예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국제무역에 관련된다. 국제경쟁사건에서는 일국의 경쟁기관이 자국의 범영역내에서 자국의 경제주체에게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이러한 국제경쟁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지법, 행위지법, 결과발생지법, 속인법 등이 사건에 관련된 상이한 국가의 법인 경우가 보통이며, 이 경우 어떤 것을 준거법으로 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기 전에 일국의 경쟁기관이나 법원이 해결하여야 할 선행과제가 된다.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국제무역의 증대로 인하여 향후 국제경쟁사건의 발생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법의 저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쟁법 학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국제경쟁사건에 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되게 된 계기는 2001년의 General Electric과 Honeywell 간의 기업결합<sup>2)</sup>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도 한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의 존재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에 관한 인식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국제경쟁사건이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된, 말하자면 독점금지법 국제화된 최초의 계기를 뉴욕대학의 First 교수는 다음과 같은 1980년대 초의 IBM 사건에서 찾고 있다.<sup>3)</sup>

1982년에 미국 연방법무부의 독점금지국장인 William Baxter는 파리로 가서 유럽공동체의 경쟁국장을 만났다. 만남의 이유는 당시 현안이었던 유럽위원회의 IBM 조사건으로 인한 유럽과 미국 간의 잠재적 충돌가능성 때문이었다. Baxter는 10년 이상 소요되었던 IBM을 상대로 한 독점화소송<sup>4)</sup>을 종결한 직후였고, 이 사건에서 얻는 것이 없다고 보고 독점금지 구제책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유럽위원회가 IBM에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규격의 공시 명령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유럽위원회에 계류된 IBM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메모리 결합판매(memory bundling) 관행과 인터페이스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관행 두 가지였다.<sup>5)</sup> 심리중 메모리판매 문제는 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메모리가 더 이상 중앙처리장치의 주요 부분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IBM은 원래부터 문제의 EEC System-370을 메모리 없이 공급하거나 최소한의 시험에 필요한 메모리만 장착하여 제공하려 했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페이스 공시문제는 처음에는 유럽위원회가 IBM 컴퓨터와 호환되는 주변장치의 독립적 제조자들이 경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비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다른 기업들이 IBM의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작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IBM System-370의 source code를 공시하지 않은 점과 Systems Network Architecture(SNA)로 알려진 통신 기준과 관련하여 채택된 관행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그러한 인터페이스 정보의 비공시는, IBM의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작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에 필

2) 미국 법무부는 조건부로 합병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EU위원회는 General Electric의 Honeywell 인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Case No IV/M.2220. 2001.7.3. press release IP/01/939; Department of Justice, News Release at: [http://www.usdoj.gov/atr/public/press\\_releases/2001/8140.pdf](http://www.usdoj.gov/atr/public/press_releases/2001/8140.pdf).

3) Harry First, *Evolving toward W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ntitrust*, in: Josef Drexl (editor), *The Future of Transnational Antitrust - From Comparative to Common Competition Law*, 2003, pp. 23-24.

4) 이 사건은 심리기간이 10년을 넘었고, 조사기록의 엄청난 양이나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인력 등의 면에서 그 때까지 유례가 없던 큰 사건이었다.

5) 전자는 IBM이 주메모리 기능을 중앙연산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의 가격에 포함시키고 별도로는 공급을 거절한 관행을 가리켰고, 후자는 IBM이 자사의 컴퓨터가 실제로 시판되기 전까지 컴퓨터의 시스템을 공시하지 않아서 IBM의 하드웨어와 호환되는 장치의 제조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관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IBM, *The 14th Annual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1984), points. 77-79.

요한 데이터통신업에서의 표준 컴퓨터 네트워킹 절차의 개발 노력에 필연적으로 역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IBM은 1984년 자사의 문제가 된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sup>6)</sup> 유럽위원회는 제86조(현재의 제82조)에 의한 절차를 중단하였다. 유럽위원회는 관련 피해기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IBM에 대한 법적 절차를 재개할 권리를 유보하였고, IBM은 일정기간은 합의를 준수하되 수 개월 동안 해결안의 중지 통지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IBM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활동중인 어느 하나의 법영역에서의 독점금지집행은 그 집행국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 법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독점금지 는 국제화 될 수밖에 없다.

### III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으로는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하는 방안이 있다. 후술하는 경쟁법의 수렴이나 조화에는 실제 규범과 절차규범의 수렴을 위한 별도의 국가간 교섭이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에 반하여, 역외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기존의 경쟁기관 의 조사권한이나 수단을 외국사업자에게 확대 적

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이고 경쟁법의 수렴을 위하여 요청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역외적용의 접근방법은 현재의 자국 경쟁법을 외국사업자에게 역외적용 하면 되므로 가장 간단하고 용이하다. 하지만 이 역외적용의 방안도 그 장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의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각국 경쟁법의 실제조항 및 절차조항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술적으로 역외적용을 하는 일국의 경쟁 기관이 범위만 사실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집행을 위한 송달 등의 문제에서 관련 외국의 경쟁당국이나 관계당국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일국의 경쟁법을 타국의 사업자에게 역외적용 하는 것은 경쟁법을 그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일종의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할 위험도 존재한다. 경쟁법은 원래 국내에서 적용되어 자국의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을 확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외국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 하려는 시도가 종래 있어 왔다. 1992년에 법무부는 미국 독점금지법을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든 없든,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2002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UCAR인터네

6) IBM은 인터페이스 정보를 유럽공동체내에서 판매하려는 새 System-370의 발표 후 120일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source code 인터페이스 정보를 신상품의 발표 후 인터페이스가 기술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신속히 경쟁자들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셔널 등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853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건이 동아시아 지역 최초의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건이었다.

2003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5개 국적의 6개 기업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역외적용하여 총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0월 국내 및 국외에서의 외국사업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고, 2003년 7월부터는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3건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처리하여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Globespan/Intersil 기업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독점규제법을 역외적용 하여 왔지만 그것이 독점규제법상의 명시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2004년 12월의 독점규제법 개정시 미국<sup>7)</sup>과 독일<sup>8)</sup> 등의 예에 따라 역외적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sup>9)</sup> 이는 효과주의 내지 영향법리(the effects doctrine)를 채용한 것이다.

## IV 경쟁법의 조화와 수렴

### 1. 조화와 수렴의 기본적 방법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의 경쟁법의 실제조항 및 절차조항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상이한 범영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제도를 수렴하기 위한 시도는 두 가지 기본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째 요소는 우수한 규범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컨센서스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실제적 및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범영역에서 그 기준을 실험하여야 하고, 특정 접근법의 장점과 취약점 등에 대한 실무적 평가에 관하여 국제회의나 국제저널에서 논의되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범수립 단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개별 국가나 범영역이 공통의 절차적 또는 실제적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용의 절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그 가운데 “연성수렴” 또는 “느슨한 수렴”(soft convergence)의 방법과 “경성수렴”(hard convergence)의 방법이 거론되어 왔다. 전자는 둘 이상의 범영역이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 즉 조

7) 1982년 무역거래독점금지개선법(The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82) §6a “독점금지법의 관할권은 대외거래 및 무역에 관한 행위가 미국의 국내거래 또는 수입거래나 수출거래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미친다”.

8)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130(2) “이 법은 이 법의 적용범위 밖에서 경쟁제한행위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 법의 적용영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9)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약이나 그 밖의 정형적 협정 없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고, 후자는 복수의 국가들이 공통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연성 및 경성수렴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경쟁정책의 수렴에 관한 현대적 움직임은 통상 컨센서스의 형성 촉진과 편입의 자발적 절차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에의 참여를 통한 우수한 규범의 수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수렴활동은 본질적으로 양자협정(bilateral agreement), 지역협정(regional agreements), WTO, OECD 또는 ICN과 같은 범세계적 네트워크(global networks)를 통한 세계 경쟁규범의 수렴 등의 경로로 이루어진다.

경쟁정책의 수렴을 촉진할 필요성은 그 전에도 거론되어 왔지만, 특히 2001년의 General Electric의 Honeywell 기업결합사건에서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이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여 야기된 충돌이 계기가 되어<sup>10)</sup> 그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 2.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방안

종전에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에 관하여 제기된 주요 제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1) 1991년 미국법률가협회(ABA) 제안

B. Hawk 교수(Fordam 대학), E. M. Fox 교수(New York 대학), H. M. Appelbaum 변호사, 松下滿雄 교수(東京 대학) 등이 참가한 ABA 국제 독점금지특별위원회가 법무부, FTC 등의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작성한 1991년 9월의 보고서는 각국의 독점금지법의 공통적 운용 방침을 권고하였지만,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 2) 1993년 국제독점금지법협정안(원헌-code)

J. Drexel(München 대학), W. Fikentscher 교수(München 대학), U. Imenga(Göttingen 대학), 正田彬 교수(上智 대학) 등에 의한 작업그룹의 보고서는 국제독점금지법협정안(The Draft International Antitrust Code: DIAC)과 그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이보다 앞서서 Boeing의 McDonnell-Douglas 인수계획에 대하여 미국의 FTC는 허용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EU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이 반경쟁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Boeing의 배타적 계약관행의 변화를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 Boeing/McDonnell-Douglas, Case IV/M. 877 (1997.7.30) O.J. L336/16 (1997.12.8); The Boeing Co., et al., Joint Statement Closing Investigation of Proposed Merger and Separate Statement of Commissioner Mary L. Azcuenaga, FTC File No. 971-0051 (1997.7.1), reprinted in 5 Trad. Reg. Rep. (CCH) P 24,295. 또한 Ciba-Geigy/Sandoz 사건에서 FTC는 유전자 치료법 상품의 관련시장에서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 혁신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산을 요구하였지만, EU위원회는 유사한 구제책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iba-Geigy, Ltd., et al., Consent Order Issued (1997.3.24) reprinted in 5 Trad. Reg. Rep. (CCH) P 24,182. Ciba-Geigy/Sandoz, Case IV/M. 737 (1996.7.17) O.J. L 201 (July 29, 1997).

11) 伊從 寛·山内惟介·J. O. Harry (編著) 「競争法の國際的調整と貿易問題」日本比較法研究所刊(1998).

### 3) 1994년 F.M. Scherer 교수(Harvard 대학)의 제안

국제협정에 의하여 WTO에 경쟁정책국(ICPO)를 설치하여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국제협정 1년후에 모든 수출카르텔이나 수입카르텔 또는 국제무역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는 기업은 ICPO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4) 1995년 E.M. Fox 교수(New York 대학)의 제안

카르텔금지과 시장접근의 보장이라는 강력한 독점금지법원칙을 공유하고; 그 국내법원칙에의 구체화와 유지를 협정하고; 다른 가맹국을 해치는 반경쟁행위를 용인·촉진·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다른 가맹국의 상품·서비스·자본에 관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채용하고; 반덤핑규제를 독점금지법상의 약탈가격규제로 이행시키고; 기술개발 공동행위·네트워크·제휴 등에 의한 자유로운 활동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경쟁촉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공통원칙·관할권·분쟁처리절차 등을 촉진하는 등의 실질적 원칙과 실시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5) 1995년 EU 전문가그룹 보고서

1995년 10월에 공표된 보고서는 1) 경쟁정책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이유, 2) 양국간 협력에 관한 EU의 최근의 경험, 3) 경쟁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국제협력의 한계 및 4)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정책과 법의 시행의 개선을 위한 연구회의 제언으로 이루어졌다.

### 6) 1997년 E.M. Fox 교수(New York 대학)의 제안

EU의 준칙(directive)과 같은 접근법을 통하여 여러 원칙을 특정하고, 그것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경쟁법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1995년 제안과의 차이점은 반경쟁적인 거래제한적 정부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점 등이다.

## 3. 국제통상질서의 흐름 :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병존

2차대전 후 세계무역은 관세의 인하,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의 철폐,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1948년에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전쟁의 원인이 블록경제에 있다고 인식한 미국은 이를 폐지하여 전후의 경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GATT 제1조제1항의 일반적 최혜국 대우원칙을 규정함으로써 GATT협정 가맹국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위기로 인한 무역불균형의 심화, GATT의 원칙을 잠탈하는 무역장벽의 발생 등으로 기존 GATT체제로는 대처하기 어렵게 되자, 1993년 12월 15일 117개국이 참가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 UR)의 결과로 체결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규범인 WTO협정의 이행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으며 현재 그 회원국의 수는 146개에 이르고 있다.<sup>12)</sup>

그러나 다수의 가맹국들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

으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부분적으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 지역과 같이 긴밀하게 결합된 일정한 수의 국가 집단들 사이의 역내 교역에만 적용되는特惠적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RTAs)으로 대체되게 되었고,<sup>13)</sup> 유럽연합(EU)의 탄생을 계기로 하여 지역주의(regionalism)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성립시키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2004년 1월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등의 다국간 FTA협정이 있고, 미·싱가포르 FTA, 일·싱가포르 FTA, 중·홍콩·마카오 FTA, 대한민국·칠레 FTA 등 2004년에 새로이 발효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면 총 195개의 FTA 양자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협정체결국인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이 마무리단계이고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고, 2005년 7월초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으로 이루어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최근 캐나다와의 FTA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러한 FTA 협정은 그 안에서 경쟁문제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NAFTA의 경우에는 경쟁문제로서 협의의 독점금지문제 외에 수출 카르텔, 보조금지금 문제, 반덤핑 문제, 관할권 문제, 예양(comity) 등이 거론되었다.

## V 전망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의 대상이 될 주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려 한다.

독일의 저명한 경쟁법학자 W. Fikentscher 교수는 2002년에 경쟁법의 수렴이 논의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제로서 다음과 같은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sup>14)</sup>

- i) 불공정거래관행법의 도입, 특히 약탈적 가격책정 및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반덤핑과 보조금법 등에 관한 것
- ii)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면서, 집단적 재화의 법과 관련하여 독점금지과 공정거래규칙을 도입하는

12) 孫珠瓚, “韓中日自由貿易協定(FTA)의 展望과 競爭法條項”, 아시아법제연구 창간호 80면 (2004.3).

13) 고준성(KIET), 「DDA에서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규범의 개정 논의 및 방향에 대한 분석」(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3년 동계학술대회)(자료), 3면; 孫珠瓚, 앞의 논문, 81면 註9.

14) Wolfgang Fikentscher, *Cultural Implications in the Framework of Basic Issues of Competition Law*, in: Josef Drexel (editor), *The Future of Transnational Antitrust - From Comparative to Common Competition Law*, 2003, p. 19.



것: 시장경제와 집단재(collective goods) 경제간의 적절한 묘사도 광의의 독점금지에 속한다.

- iii) 일정한 수평적 쟁점, 예컨대 수출카르텔, 노동시장 및 스포츠산업과 같은 것의 속고
- iv) 전자상거래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규칙의 작성
- v) 수직적 쟁점, 예컨대 배타적 거래와 서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현대적 쟁점의 속고
- vi) 지적재산권의 구체화: 지적재산권의 소진 법리(exhaustion doctrine)와 병행수입, 인터넷 쟁점 등
- vii) 기업결합에 대한 분석: 배타적 협정과 결합된 기업결합, 언론기업의 집중, 동의명령에 의한 구조적 정책, 국제적 투자보호장치
- viii) 독점화 쟁점의 속고: 필수설비, 공적 독점, 전기통신시장, 공익사업체의 규제완화
- ix) 제도적 모델의 개선: 원고적격; amicus curiae; 컨설팅 등
- x) 국제적 독점금지를 위한 거점(home-stand): WTO, WIPO, sui generis "독점금지 제휴(antitrust alliance)" 기관, ICN
- xi) 일방주의, 쌍방주의, 다자주의 및 그것들의 혼합

이론적으로는 경쟁법의 수렴은 국제경쟁사건의

발생가능성, 각국의 경쟁법제의 실제적·절차적 내용상의 차이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국제경쟁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각국의 경쟁법제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i) 기업결합이나 ii) 카르텔 등의 분야에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sup>15)</sup>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실체법 외에 집행법과 관련하여서는 역으로 각국 법제상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적·사적 구제수단의 차이가 심한 부분이나 경쟁법의 적용제의 사유 등 효과가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조화와 수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적용제외의 예를 들면, 미국의 the Webb-Pomerence Export Trade Act of 1918은 수출업자로 이루어진 사업자단체의 공동판매활동에 대하여 제한적인 독점금지면책을 부여하였다. 또한 미국의 the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는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미국내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미국의 경쟁사들에 의한 수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출 관련 협력에 대하여 독점금지면책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수출카르텔에 대하여 무역정책적 이유에서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적용제외를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국제무역을 저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면제는 그 수출카르텔이 행해진 국가의 경쟁법으로부

15) 허 선,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수렴화-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 경쟁당국간 협력 현황-", 「글로벌시대의 국제통상과 경쟁법-국제경쟁사건에서 법의 저축과 해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 (2005.6.24)는 국제적 기업결합 분야와 국제카르텔 분야를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들고 있으며, 먼저 선진국간에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수렴화가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개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터의 면제일 뿐 그 카르텔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외국의 경쟁법의 적용에 지장을 주지는 아니한다. 그 같은 어느 국가의 수출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담은 입법에 대하여 외국의 시각은 당연히 불쾌할 것이고 그 국가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으며 종국적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에도 방해가 될 것이므로, 행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상의 경쟁제한적 법령·처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여권(법 제63조)은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동될 수 있다.

향후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각국의 경쟁당국에 의해서 행해질 때 경쟁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인가 아니면 국제통상에 하나의 새로운 장애로 작용할 것인가.

집작전대 현재와 같이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전 세계적 조류라고 할 수 없는 동안에는 후자의 가능성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후자의 가능성이 커질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각국의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폐쇄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통상라운드를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또는 다국간 경쟁라운드를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어찌면 각국의 역외적용과 병행하여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 노력은 이미 현재진행형인지도 모른다. 경쟁법 학계나 이론가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론을 정연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경쟁기관과 외교기관을 대표로 한 국가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후발국가나 체제전환국의 경쟁법 및 정책의 이론적 발전에 원조·기여함으로써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분야의 표준을 제정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향후 오랜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의 국제통상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짐작된다. 아시아 각국과 세계로 우리 문화의 바람이 불어간다고 말해지는 이 때에 경쟁문화에 있어서도 한류가 세계의 큰 흐름의 하나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경쟁저널**